

수원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8가합22100 판결 [사해행위 취소 등]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142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8가합22100 판결

전 문

원고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마상미

원고승계참가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서창규

피고1. D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2. E 주식회사

피고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일원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호, 이재광

변론 종결2020. 12. 16.

판결 선고2021. 1.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D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6,127,693,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21. 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D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5%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들

1. 피고 D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원고들에게 21,572,664,280원과 그중 16,127,693,670원에 대하여는 2017.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444,970,610원에 대하여는 2017. 8. 11.부터 이 사건 2019.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가.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2017. 2. 12. 및 2017. 8. 11. 각 체결한 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피고 D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관리대장상 피고 E 주식회사의 취득자 명의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1. 피고 D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위 1항 기재 돈을 참가인에게 지급하라.
 2. 위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6 내지 19,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6, 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가칭)D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설립 전 조합'이라 한다)은 용인시 처인구 F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단체로 2007. 10. 31. (주)G(이하 'G'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권을 위임하는 계약(이하 '1차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G는 2008. 1. 31. H(주)와 300억 원을 한도로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31. (주)I과도 150억 원을 한도로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주)1) (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2008. 1. 31. H(주)와 위 대출채권 중 150억 원을, 2008. 7. 31. (주) I 과 위 대출채권을, 각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 B(주)2) 도 2008. 2. 26. H주와 위 대출채권 중 나머지 150억 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각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고자 2008. 7. 31. G와 위 1차위임계약에 따라 G가 설립 전 조합에 대하여 보유하는 사업시행대행권과 체비지 양도청구권, 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비용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일체의 계약상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제1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설립 전 조합은 2008. 8. 5.과 2008. 11. 17. 위 양도사실을 각 통지받고서는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서면으로 승낙하였다.

바. 이후 피고 D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9. 8. 20.

용인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2009. 11. 5. 그동안 설립 전 조합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사. 피고 조합은 2014. 1. 13. G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권을 위임하는 계약(이하

'2차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사업금액)

1. 피고 조합은 본 사업지구 내 환지교부 기준이 되는 면적은 개인 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 상의 등재된 면적으로 하며, 총 면적의 47%를 환지하고 평균 감보율 53%와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의 해당 토지 면적을 합친 면적에서 무상으로 기부하는 공공용지(도로, 공원, 기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체비지)을 총 사업비(도급액)로 한다.

3. 체비지면적은 37,000평으로 한다. (단, 국공유지로 인하여 체비지 증감이 있을 경우 이는 예외로 한다)

제4조(사업시행기간)

사업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 5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 조합과 G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1. G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 (단, 피고 조합의 서면 승낙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조합운영비)

G는 피고 조합에게 본 계약 체결 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매월 조합운영비 3,000만원을 기채금으로 지급한다.

제14조(사업비 지급방법 및 하자보증)

1. 피고 조합은 환지예정지 지정인가와 동시에 G가 수임하여 기채한 설계용역비 및 지장물 보상비, 조합운영비, 공사비 등에 상응하는 체비지를 최우선적으로 G에게 지급한다.

2. G가 사업비 조달(PF)을 완료하여 피고 조합에게 기채금이 입금될 경우, 피고 조합은 G에게 본 계약 체결일까지 입금된 기채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 조합은 제1항 이후의 공정에 따른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등의 지급은 그 목적 기성분에 대하여 매 2개월마다 그 기성고를 피고 조합은 G에게 체비지로 지급한다.

4. 피고 조합은 G가 본 사업을 종료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정산절차를 거쳐 피고 조합은 지체없이

잔여 공사비(체비지)를 G에게 지급한다.

제18조(지체상금)

G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1일당 공사도급금액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피고 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으로 5/100을 초과할 수 없다.

아. G는 2015. 7. 11. (주)Q(이하 'Q'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5. 7. 24. Q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권을 위임하는 계약(이하 '3차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사업금액)

1. 피고 조합은 본 사업지구 내 환지교부 기준이 되는 면적은 개인 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 상의 등재된 면적으로 하고, 총 면적의 47%를 환지하며, 평균 감보율 53%와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의 해당 토지면적을 합친 면적에서 무상으로 기부하는 공공용지(도로, 공원 기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체비지)에 상응하는 금액을 총 사업비(도금액)로 한다.

제4조(사업시행기간)

사업기간은 당초 승계하는 계약의 체결일인 2014. 1. 13.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 5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 조합과 Q는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1. Q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 (단, 피고 조합의 서면 승낙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조합운영비)

Q는 피고 조합에게 본 계약 체결 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매월 조합운영비 3,000만원을 기채금으로 지급한다.

제14조(사업비 지급 방법 및 하자보증)

1. 피고 조합은 환지에정지 지정인가와 동시에 Q가 수임하여 기채한 설계용역비 및 지장물 보상비, 조합운영비, 공사비 등에 상응하는 체비지를 최우선으로 Q에게 지급한다.

2. Q가 사업비 조달(PF)을 완료하여 피고 조합에게 기채금이 입금될 경우, 피고 조합은 Q에게 본

계약 체결일까지 입금된 기채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 조합은 제1항 이후의 공정에 따른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등의 지급은 그 목적 기성분에 대하여 매 2개월마다 그 기성고를 피고 조합은 Q에게 체비지로 지급한다.

4. Q는 본 사업을 종료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피고 조합은 정산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잔여 사업비(체비지)를 Q에게 지급한다.

제18조(지체상금)

Q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1일당 공사도급금액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피고 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5/100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자. 한편, 피고 조합은 2017. 2. 7. G와 2015. 7. 23.3) 까지 지급받은 기채금

16,127,693,670원(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을 환지계획인가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차. 피고 조합은 재차 2017. 2. 17. G와 2차위임계약이 2016. 11. 24.자 통보에 의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기채금, 용역비, 보상비, 운영비, 공사비 등 일체를 위와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아래와 같이 환지계획인가 후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3. 피고 조합은 G에게 16,127,693,670원을 피고 조합의 D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예정지 인가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4. 피고 조합이 G에게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략) 위 금원에 상당하는 토지(상업용지 1,000평, 평당 1,650만 원)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5. G는 2008. 8. 계약상 권리를 원고 A에 위수임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피고 조합이 2008.

8. 5.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 조합이 제3, 4항에 기재된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G는 G로부터 계약상 권리를 양수한 원고 A과 협의를 마친 서면으로 피고 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피고 조합은 제5항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제3, 4조에서 정한 정산합의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카. 피고 조합, Q는 2017. 2. 21. 피고 E(주)4)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S로트 500.0m²'를 체비지로 신탁하는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2017. 8. 11. 위 체비지에서 위 'S로트 500.0m²'를 삭제하고 별지1 목록 34항 기재 토지를 'T로트 25,173.0m²'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 목록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017. 8. 29. 체비지 관리대장을 생성하여 소유권보존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등재하였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피고 회사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신탁부동산의 인수)

①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는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사업정산시까지로 한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피고 조합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피고 회사는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방법 및 처분조건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피고 조합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리·처분신탁 특약사항

제4조(신탁계약 등의 효력 및 우선적용)

① 피고 조합은 신탁계약 체결 후 환지계획인가 즉시 신탁부동산을 체비지 대장에 등재하기로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피고 조합 및 Q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신탁부동산의 임대차관리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현장관리·수선유지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8조(우선수익자) 삭제

타. G는 2017. 6. 14. 원고들과 제1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조합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파.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담보하고자 2017. 3.경 그 물상보증인인 Q와 위 3차위임계약에 따라 Q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보유하는 사업시행대행권과 체비지양도청구권,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비용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일체의 계약상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제2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6.경 Q와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다. 이에 Q는 2017. 6. 15. 피고 조합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하. 한편, 피고 조합은 2017. 8. 11. 환지계획인가를 승인받았다.

거. 참가인은 2019. 12. 26. 원고들과 G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과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주로서 모든 권리, 권한 및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20. 9. 21. 피고 조합에게 위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으며, 참가인은 2020. 10. 26. 이 사건에 승계참가하였다.

2.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 조합에 대한 G 관련 금전청구 가) 피고 조합은 2017. 2. 7. G와 기재금 16,127,693,670원 상당의 제1채권을 환지계획인가 즉시 지급하겠다는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2017. 8. 11.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권의 담보하고자 2008. 7. 31. G와 1차위임계약에 따라 G가 설립 전 조합에 대하여 보유하는 제1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계약상 권리를 양수하는 제1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설립 전 조합의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받았으며, 피고 조합은 설립 전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2017. 6. 14. G와 제1채권을 양수하는 계약도 체결하였고, G는 같은 날 피고 조합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위 16,127,693,6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합에 대한 Q 관련 금전청구 가) 피고 조합은 2015. 7. 24. Q와 3차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5. 9. 18.부터 2017. 11. 3.까지 Q로부터 기채금 5,444,970,61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Q는 피고 조합에게 5,444,970,610원 상당의 기채금 채권(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담보하고자 2017. 3.경 Q와 3차위임계약에 따라 Q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 제2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계약상 권리를 양수하는 제2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Q는 2017. 6. 15. 피고 조합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설령 양수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Q의 피고 조합에 대한 제2채권을 대위행사한다.

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위 5,444,970,6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신탁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체비지를 신탁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신탁계약은 제1, 2채권의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피고들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관리하는 대장의 피고 회사의 취득자 명의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

참가인은 2020. 9. 17. 원고들로부터 제1, 2채권을 모두 양수받았고, 원고들은 2020. 9. 21. 피고 조합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참가인에게 제1, 2채권에 따른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제1, 2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동일하게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채권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G의 다른 채권자들이 아래 표와 같이 제1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청구금액은 총 5,723,432,716원에 이르므로, 제1채권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들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들은 위 부분 양수금 채권에 기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8호증	중앙2013타채27703	U	361,769,497	2013. 9. 5.
을 제29호증	중앙2015타채4859	V	346,506,689	2015. 2. 26.
을 제30호증	중앙2016타채108497	W	1,683,000,000	2016. 9. 21.
을 제31호증	중앙2017타채4240	X	2,108,036,530	2017. 3. 29.
을 제32호증	중앙2017타채5213	Y	1,224,120,000	2017. 4. 3.
합계			5,723,432,716	

원고들과 G 채권자들 사이에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선후에 의하여 추심채권자와의 우열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당사자적격의 상실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바⁵⁾, 앞서의 인정사실, 을 제28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7. 31. G와 1차위임계약에 따라 G가 설립 전 조합에 대하여 기채금 채권을 비롯한 일체의 계약상 권리를 양수하는 제1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설립 전 조합은 2008. 8. 5.과 2008. 11. 17. 위 양도사실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승낙한 사실, 이후 피고 조합도 설립 후 2009. 11. 5. 그동안 설립 전 조합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을 추인하는 결의도 한 사실, 이후에야 G 채권자들이 위 표 및 아래 표와 같이 제1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피고 조합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각 채권자들은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수원2017타채115071	Z	132,815,893원	2017. 11. 16.	수원2013카단48026) 다만,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2017타채115071 결정은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된 것이나, 위 가압류 사건의 사건번호에 비추어 이 역시 위 승낙 후에 이루어졌을 뿐이다.
중앙2018타채3194	AA(주)	1,511,780,630원	2018. 2. 26.	
중앙2019타채11965	(주)AB	7,372,000,000원	2019. 10. 24.	
중앙2019타채13356	AC	79,839,451원	2019. 11. 27.	

수원2017타채115071	Z	132,815,893원	2017. 11. 16.	수원2013카단48026) 다만,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2017타채115071 결정은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된 것이나, 위 가압류 사건의 사건번호에 비추어 이 역시 위 승낙 후에 이루어졌을 뿐이다.
합계		9,096,435,974원		

2) 본안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고들은 2020. 9. 17. 참가인에게 제1채권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채권 청구에 관한 판단

1) 선결쟁점 : 채권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2020. 9. 18. 피고 조합에게 원고들이 양수한 2, 3차위임계약에 따른 제1, 2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7,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들이 2019. 12. 26. 참가인과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서 전문에서 G에 대하여 각 보유 중인 대출채권, 담보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와 대출약정상 대주로서의 지위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계약상 지위를 양도한다고 규정할 뿐, 원고들의 Q에 대한 채권에 관한 내용은 없는 사실, ② 위 계약 제1, 2조에 따른 양도 대상자산, 위 당사자 사이 2020. 7. 체결된 변경계약7), 2020. 9. 17. 체결된 변경계약8) 에도 원고들의 Q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제2채권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채권의 권리자는 원고들로 인정해야 하므로, 원고들의 제2채권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Q의 다른 채권자들이 아래 표와 같이 Q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 비용상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청구금액은 총 63,459,388,170원에 이르러 위 금액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들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원고들은 제2채권에 기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40호증	중앙2017타채14361	AD	4,744,805,492	2017. 8. 31.
을 제41호증	중앙2018타채10618	AE	1,200,000,000	2018. 6. 22.
을 제43호증	중앙2019타채10050	AF, AG	57,397,260,274	2019. 8. 20.
을 제44호증	중앙2020타채110840	AH	117,322,404	2020. 5. 20.
합계			63,459,388,170	

살피건대, 을 제40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담보하고자 2017. 3. Q와 3차위임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제2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Q는 2017. 6. 15. 피고 조합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이를 통지한 사실, 이후 Q의 다른 채권자들이 위 표와 같이 Q의 피고 조합에 대한 제2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모두 위 채권양도 통지 후에야 피고 조합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Q 채권자들은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법원의 2019. 5. 29.자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피고 조합이 별지2 기재와 같이 Q로부터 지급받은 기채금 내역을 제출한 사실, 그 내역에는 Q가 피고 조합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5,867,970,610원이고, 회수한 돈이 423,000,000원으로 총 입금액이 5,444,970,6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 을 제25, 46, 54, 57, 59, 60, 61, 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2015. 9. 18. 입금된 20,000,000원 등 합계 5,174,280,070원9)의 입금내역은 G 또는 Q가 아닌 제3자가 입금한 것인 점, ② 위 송금자들이 Q 대신 위 각 기채금을 입금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없는 점, ③ 위 5,867,970,610원에서 위 5,174,280,070원을 제외한 693,690,540원10)은 피고 조합이 2016. 9. 30. Q에게 반환한 5억 원을 포함한 9억 2,300만 원11)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위 기채금 채권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별다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Q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5,444,970,610원 상당 기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은 최초 2017. 2. 21.에 체결되었는데, 원고들은 2017. 6. 14. G로부터 제1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무렵 위 신탁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G가 2017. 2. 7.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피고 조합 명의의 문서 참조란에는 신탁회사인 피고 회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조합이 2017. 2. 21. 피고 회사와 최초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G는 2017.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에 기한 제1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그 무렵 위 신탁계약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취소원인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채권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제1채권 중 채권자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5,723,432,716원에 관한 이행의 소는 참가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G가 원고들에게 제1채권을 포함한 1차위임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제1담보계약에 따라 양도한 사실, 설립 전 조합은 위 채권양도를 서면으로 이의를 유보함 없이 동의하였고, 피고 조합은 설립 전 조합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을 추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 조합은 2017. 2. 7. G와 제1채권을 환지계획인가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7. 2. 17. 환지계획인가 후 30일 이내에 제1채권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체결한 사실, 피고 조합은 2017. 8. 11. 환지계획인가를 승인받은 사실, 참가인은 2019. 12. 26. 원고들과 G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과 각 대출약정에 따른 모든 권리, 권한 및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2020. 9. 21. 피고 조합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들을 거쳐 제1채권을 최종 양수한 참가인에게 제1채권 상당인 16,127,693,67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급약정 부인 주장

(1) 주장 :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 AI이 G의 부탁으로 구체적인 기채금 입금내역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제1채권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지급약정에 관한 갑 제10호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조합이 실제 2015. 7. 23.까지 G로부터 지급받은 기채금은 15,987,693,670원에 불과하며, 피고 조합 계좌에 2015. 11. 3. 입금된 30,000,000원 및 2015. 11. 27. 입금된 250,000,000원도 AJ 및 AK이 피고 조합에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여 분쟁 중에 있는 돈으로 기채금이 아니다.

(2) 판단 :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6210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을 제15, 57, 5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지급약정 체결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도금지특약 위반 주장

(1) 주장 : ① 1차위임계약에는 설립 전 조합의 서면승낙 없이는 계약상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어 이를 위반한 G의 원고들에 대한 제1담보계약에 따른 일체의 계약상 권리 양도는 무효이고, ② 설령 설립 전 조합이 그 이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을 했더라도 이는 설립 전 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③ 설령 위 승낙이 유효해도 이후 설립된 피고 조합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판단 : 설립 전 조합이 서면으로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한 사실, 피고 조합은 설립 전 조합을 거쳐 2009. 8. 설립된 후 2009. 11. 5. 총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설립 전 조합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승낙의 효력은 피고 조합에도 미친다.

(3) 피고 조합은 위 추인결의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전 대표자 AL이 조합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일괄승인한 것으로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조합은 위 결의를 통해 설립 전 조합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 즉 정관, 위수임계약, 평균감보율 47%, 각종 용역계약, 비용, 의결추진행위 등 기 추진사항 등을 승계·승인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설명한 후 의견을 구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을 뿐이다¹²⁾

(4) 따라서 피고 조합의 위 주장 모두 이유 없다.

다) 도시개발법 제70조 제2항 위반 주장

(1) 주장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자기 자본 없이 토지소유자인 조합원들 부담으로 마련된 체비지로 사업비를 조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체비지 매각대금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이 형해화되고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게 되므로,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매각대금은 도시개발사업 목적으로만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설립 전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이 아닌 이 사건 대출채권의 담보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비지 등 일체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개발법 제70조 제2항13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 목적이 아닌 목적에 사용함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무효이다.

(2) 판단 :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제1담보계약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도시개발사업 목적이 아닌 목적에 이 사건 체비지 매각대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금전청구 불가 주장

(1) 주장 : 기채금의 지급방식은 2차위임계약 제14조, 이 사건 정산합의 제4조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만 이행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 앞서의 인정사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2차위임계약

제14조 제1, 3, 4항에서 피고 조합이 G에게 기채금 등에 상응하는 체비지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② 이 사건 정산합의 제4조에서 피고 조합이 G에게 제3항14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조합의 전체 체비지 37,000평 중 집단체비지로 지정된 AM, AN블록 27,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체비지 약 10,000여평 중에서 위 금원에 상당하는 토지(상업용지 1,000평, 평당 1,650만원)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정산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지급약정,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G에게 기채금 특정하여 금전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점, ② 2차위임계약, 이 사건 정산합의의 해석상 피고 조합이 위 기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담보설정의 취지로 보이는 점, ③ 결국 위 조합들이 원고들로 하여금 금전지급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조합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조건불성취 주장

(1) 주장 : 1차위임계약 제16조 제1항 사목에 의하면 "G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G는 피고 조합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1차위임계약이 G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이상 제1채권 등 G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1차위임계약 제11조에서 "조합운영비는 본 계약 체결 후부터 준공시까지 매월 25일 기준으로 2,100만 원을 G가 피고 조합에게 기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제1채권은 위 조합에 따라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7, 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채권이 제16조 제1항 사목에 정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소멸시효 주장

(1) 주장 : 제1담보계약은 1차위임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인데, 1차위임계약은 2013. 8. 12. 피고 조합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설령 제1채권이 있었더라도 원고들은 위 해지시점인 2013. 8. 12.로부터 5년이 지난 2018.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제1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 기채금 채권은 G가 피고 조합에게 각 기채금을 지급한 시점에 발생한다 할 것인바, G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 피고 조합에게 위 16,127,693,67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반면, 앞서 보았듯이 피고 조합은 2017. 2. 이 사건 지급약정 및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해 위 제1채권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상계 주장

(1) 주장: G가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G에게 2차위임계약 제18조15에 따라 지체상금 22,337,237,327원¹⁶ 상당 채권이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참가인의 제1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차위임계약은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합의로 해지되었는바, 피고 조합은 G에 대해 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달리 피고 조합이 G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참가인에게 위 16,127,693,6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변제기로 환지계획인가 후 30일이 되는 날(원고는 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지급약정에서 정한 변제기는 그 직후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의 다음날인 2017. 9. 12.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2채권 청구에 관한 판단

참가인이 원고들로부터 제2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설령 참가인이 원고들로부터 제2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한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2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피고 조합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에서 정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이자 수익자가 되는 점(이른바 자익신탁에 해당한다), ② 위탁자인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갖게 되어 피고 조합의 채권자들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점, ③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체비지를 피고 회사에게 신탁한 이상 임의로 이 사건 체비지를 처분할 수 없는 점, ④ 피고 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관련 업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점, ⑤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보전·관리를 하도록 한 것인 점, ⑥ 이에 비추어 그 신탁의 동기와 신탁계약의 내용이 피고 조합의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체비지가 피고 조합의 유일한 재산임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7원고들과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창모

판사김유성

판사김도형

별지

- 1) 상호가 J(주)에서 2008. 3. 11. K(주)로 변경되었다가 이후 2016. 12. 30. L(주)에 흡수합병되었고, L(주)는 같은 날 상호를 현재의 A주로 변경하였다.
- 2) 상호가 M(주)에서 N(주), O(주), P(주)로 변경되었다가, 2018. 7. 1. 현재의 B(주)로 변경되었다.
- 3) 3차위임계약이 체결된 날의 전날이다.
- 4) 변경 전 상호: R(주)
- 5)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9676 판결 참조
- 6) 다만,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2017타채115071 결정은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된 것이나, 위 가압류 사건의 사건번호에 비추어 이 역시 위 승낙 후에 이루어졌을 뿐이다.
- 7) 매매대금 지급기일 등을 변경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고 양도 대상자산에는 변함이 없다.
- 8) 거래종결일 등을 변경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고 양도 대상자산에는 변함이 없다.
- 9) = 2015. 9. 18.자 20,000,000원 + 2015. 9. 25.자 20,000,000원 + 2015. 10. 6.자 5,000,000원 + 2015. 11. 3.자 30,000,000원 + 2015. 11. 27.자 250,000,000원 + 2016. 1. 26.자 100,000,000원 + 2016. 1. 26.자 100,000,000원 + 2016. 1. 29.자 100,000,000원 + 2016. 1. 29.자 100,000,000원 + 2016. 1. 29.자 50,000,000원 + 2016. 3. 28.자 100,000,000원 + 2016. 8. 2.자 700,000,000원 + 2016. 8. 5.자 100,000,000원 + 2016. 9. 30.자 200,000,000원 + 2016. 9. 30.자 1,000,000,000원 + 2016. 9. 30.자 1,000,000,000원 + 2016. 9. 30.자 275,283,000원 + 2016. 9. 30.자 252,108,150원 + 2016. 9. 30.자 263,087,000원 + 2016. 10. 11.자 277,921,730원 + 2016. 10. 11.자 30,880,190원 + 2016. 11. 17.자 100,000,000원 + 2017. 9. 27.자 100,000,000원
- 10) = 5,867,970,610원 - 5,174,280,070원
- 11) = 갑 제23호증 기재 반환금 4억 2,300만 원 + 을 제54호증의 4기재 반환금 5억 원
- 12) 위 결의에 대한 총회 의사록 제3호 안건 '기타 사업추진사항(기 추진사항 승계·승인)' 항목 참조
- 13)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4) 3. '갑'은 '을'에게 제2항 기재 금원을 '갑'의 D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예정지 인가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15) 제18조(지체상금) G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1일당 공사도급금액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피고 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으로 5/100을 초과할 수 없다.

16) = 공사도급금액에 해당하는 체비지 37,000평 × 체비지의 평가액 565,575,245,000원 /
(154,848.6m² × 0.3025)평 × 지체상금 상한 0.05 (원 미만 버림)

17)대법원 2011. 5. 23. 자 2009마1176 결정 등 참조